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5월 25일
- 회부일자 : 2010년 6월 1일

3.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 7. 1.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필요한 명칭과 정원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을 변경(안 제2조)
 -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 변경 및 정원의 총수를 정함(안 제2조제1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7명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2,905명 ⇒ 2,911명(안 제2조제2호)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추가(안 제4조)
 -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7명)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13명⇒7명)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 7. 1.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조직 명칭과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은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18명으로 변함이 없으며,
 - 정원관리 단위기관 명칭과 정원을 종전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7명으로 변경 및 명시하고,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905명에서 2,911명으로 6명 증원하였음.

- 또한, 정원관리 단위기관에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를 추가 명시하였고,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로 2010년 8월 31일 까지 정원(7명)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 조례 개정애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정수를 13명에서 7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제1호의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7명과,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7명의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타 시도교육청 및 충청북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자치법규 제정 비교

2010.5.11.현재

교육청별	제 명	제정일자	공익신고자	지급한도액	비 고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0.04.15.	내부직원 일반시민	1억원	위원회 : 7명 ※ '09.7. 철회이후 재추진
부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05.10.15. '10.05.19. 개정공포	내부직원 일반시민 (개정안)	5천만원 (개정안)	위원회 : 7명 (개정안)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09.12.29.	내부직원	3천만원	위원회 : 5~7명 ※조례로 변경 예정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09.02.23.	내부직원 일반시민	3천만원	위원회 : 7명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조례	'07.06.14.	내부직원	3천만원	위원회 : 5~7명
울산					행동강령(규칙) 개정 추진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10.05.10. 교위부의	내부직원 일반시민	5천만원	위원회 :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포함 운영
강원					행동강령(규칙)
경기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0.04.27. 입법예고 완료	내부직원 일반도민	5천만원	위원회 : 7명 '08.10.제정 규칙 폐지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0.05.17. 교위부의	내부직원 일반도민	3천만원	위원회 : 7명
충남					추진 준비 중
전북					추진 준비 중
전남					추진 준비 중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10.05.공포 예정	내부직원	3천만원	위원회 : 7명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0.04.22. 입법예고	내부직원 일반도민	3천만원	위원회 : 7명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내부공익 신고에 관한 규칙	'09.05.06.	내부직원	1천만원	위원회 : 7명
충청북도 (일반회계)	충청북도 내부 공직부패신고 보상규정	'08.02.01.	내부직원	1천만원	위원회 인원 규정 없음(위원회는 구성)

3. 시·도교육청별 지급기준 비교

신고유형 (지급대상)	우리 교육청 조례(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경북	경남	제주	충청북도	비고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동일	동일	20배 이내	20배 이내	동일	동일 1천만원 이내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동일	동일	30 퍼센트 이내	동일	동일	10 퍼센트 이내, 5천만원 이내	동일	10 퍼센트 이내	동일	30 퍼센트, 부양특 300만원 이내	동일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	5배 이내	20배 이내	20배 이내	동일	동일 1천만원 이내	3백만원 이내	동일	동일	동일	동일	
	· 알선·청탁 행위 신고 · 3백만원 이내	동일	동일	20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1천만원 이내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백만원 이내	